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조 달 사 업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계약보증금 및 계약 위반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방식을 현행 업체 추정 제시금액 기준에서 실제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제 납품실적 대비 계약보증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여 업체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을 반영하도록 함

나. 계약 위반 시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방식 개선(안 14조의2 제3항)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산정 시 당초 총계약액 대비 미이행률 적용 방식을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 대비 납품 이행 중 미완료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조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 (제3자 단가계약 등 계약보증금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와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 대비 납품 이행 중 미완료 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납품 미완료 금액이 없거나, 산

출된 금액이 계약보증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자 단가계약 등 계약보증금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 (제3자 단가계약 등 계약보증금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와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u> <u>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u>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매 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 대비 납품 이행 중 미완료 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납품 미완료 금액이 없거나, 산출된 금액이 계약보증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	
연 락 처	(044) 215 - 5232